

[별표 10] <개정 1987·8·31>

사 용 공 차(제37조관련)

1. 다음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제27조에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각 검정공차의 값과 같은 값으로 한다.
 - 가. 혈압계
 - 나. 체온계
2. 다음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제27조에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각 검정공차의 2분의 3의 값으로 한다.
 - 가. 길이계
 - 나. 질량계
 - 다. 가솔린미터
 - 라. 눈새김탱크류
 - 마. 삭제<1987·8·31>
 - 바. 전기계기
 - 사. 가스미터
 - 아. 수도미터
 - 자. 액화석유 가스미터
 - 차. 오일미터
 - 카. 삭제<1987·8·31>
3. 기타 계량기에 있어서는 제27조에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각 검정공차의 2배의 값으로 한다.